

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연구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,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,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 및 안 제3조)

○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- 빅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함(안 제8조)
- 충청북도빅데이터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)
-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6조 및 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,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데이터기반행정, 빅데이터의 정의 (안 제2조)
 -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 -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 - 빅데이터 책임관의 임명 (안 제8조)
 -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(안 제9조)
 - 빅데이터 활용 등(안 제13조~안 제15조)
 -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(안 제21조) 등임.

○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충청북도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물적, 제도적 장치마련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. 끝.